

異議가 없으면 原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년 8월 9일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1991년 7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4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1년 8월 7일) 상정, 질의, 답변
제2차 내무위원회(1991년 8월 8일)질의,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원택 내무국장)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과 관련 동 사업소장 및 동대문 운영관을 별정직으로도 보할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임용에 따른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립체육관리사업소장(지방별정직 3급상당)임용자격 기준 신설
- 4년제대학 졸업의 학력소지자로서 행정경력 15년이상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7년이상인 자
-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직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한다고 인정한 자
- 동대문운영관(지방별정직 4급상당)임용자격기준 신설
- 4년제 대학졸업 학력소지자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7년이상인 자
- 5급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한다고 인정한 자
- 시의회 전문위원(지방별정직 4급상당)임용을 위한 자격기준 신설
-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이상인 자
-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대리 : 이상운 사무관)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85년 9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서 지금까지 일급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립체육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 서울특별시립체육관리사업소직제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체육관리사업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으로 동사업소 동대문운영관과 시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현행 인사관리조례에는 이들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이를 삽입하기 위한 개정절차로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었기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3급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시정의 거대성, 복합성, 특수성에 부응하면서도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있는 자가 특히, 시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임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됩니다.

4.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만장일치)

5. 부대의견(요지)

이번에 임명될 전문위원은 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키로 함.

○委員長 鞠應好 여러분 늦으신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第2次 內務委員會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20時 25分 散會)

○出席委員

鞠應好	丁寅燮	文一權
朴禧柱	李永鎭	白中元
李丁煥	尹鎮商	吳基昌
金泰雄	趙熙濬	姜晶錫
金容一	李迎春	韓仁洙